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사방지 지정 미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구, ○구, ○구, ○구, ○○군

내 용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1.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토지소재지의 지번·지목·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업의 종류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연월일
5. 지적이 표기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등에 지정·변경·해제한 사방지를 명시한 도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방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방지지정대장, 사방지지정구역도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방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¹⁾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은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 사방지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 함양의 목적대로 사방지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구청은 [붙임]과 같이 ○○동 000-00번지 계류보전 750㎡ 등 총 2필지 1,650㎡, 성안동 산60외 1필지 산지사방 1,100㎡ 대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도 2018. 2. 26. 감사일 현재까지 사방지 총 4필지 2,750㎡를 지정고시하지 않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도 그 정보를 등재하지 않고 있다.

울산광역시 ○구청은 [붙임]과 같이 ○○동 산000외 3필지 계류보전 767㎡ 등 총 6필지 4,702㎡, ○동 산000번지 산지사방 1,625㎡ 대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도 2018. 2. 26. 감사일 현재까지 사방지 총 7필지 6,327㎡를 지정고시하지 않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도 그 정보를 등재하지 않고 있다.

울산광역시 ○구청은 [붙임]과 같이 ○○동 000-00외 1필지 계류보전 550㎡ 등 총 22필지 4,710㎡, ○○동 산000 사방댐(1개) 1,386㎡ 대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도 2018. 2. 26. 감사일 현재까지 사방지 총 23필지 6,096㎡를 지정고시하지 않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도 그 정보를 등재하지 않고 있다.

1) 부동산정보시스템(KRAS),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IPS) 등

울산광역시 ○구청은 [붙임]과 같이 ○○동 산000-0번지 산지사방 2,240㎡ 등 총 19필지 42,426㎡, 매곡동 산65번지 계류보전 1,000㎡ 등 총 10필지 11,350㎡, ○○동 산000-0번지 사방댐 1,612㎡ 등 총 8필지(6개) 16,422㎡에 대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도 2018. 2. 26. 감사일 현재까지 사방지 총 37필지 70,198㎡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지 않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도 그 정보를 등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 ○○군은 [붙임]과 같이 ○○면 ○○리 산00 사방댐 581㎡ 등 총 32필지(31개) 36,881㎡, ○○면 ○○리 산00번지 계류보전 373㎡ 등 총 33필지 43,896㎡, ○○면 ○○리 산000-0번지 산지사방 610㎡ 등 총 6필지 8,111㎡에 대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도 2018.2.26. 감사일 현재까지 사방지 총 71필지 88,888㎡를 사방지로 지정고시하지 않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도 그 정보를 등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토지이용과 관련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방사업법」 등에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이 잘못 적용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군수는**

[시정] 관내에서 시행된 사방사업지 중 미고시된 142개소 174,259㎡(○구청 4개소 2,750㎡, ○구청 7개소 6,327㎡, ○구청 23개소 6,096㎡, ○구청 37개소 70,198㎡, ○○군 71개소 88,888㎡)는 사방지로 지정고시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